

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사업 1인가구 자조모임 '가치해요' 프로그램 안내

I 사업 소개

1. 목적

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성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

2. 사업대상

서울시 거주 및 생활권 1인가구

- 서울시 생활권: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시 아니지만 직장, 학교 등의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

3. 지원내용

1인가구 자조모임 구성 및 월별 모임 활동 지원

4. 지원내용

※ 모집 시 센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내에서 인원, 지원 금액, 회기 수 등이 조정될 수 있음

- 회기별 1인당 30,000원 이내 / 1인당 월별 50,000원 이내

- 3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 가능

예) 인원 4명인 모임의 1회 활동비 총합 140,000원인 경우

지원 금액 : 30,000원×4명=120,000원 / 자부담 : 5,000원×4명=20,000원

* 지원 항목 관련 : 5p 참고 /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재안내 예정

* 활동비는 선지출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, 익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. (월 1회)

5.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

1. 정기모임 월 1회 이상, 총 6회 이상 진행(월별 활동 진행 시 모임원 전체 참여 필수)

2.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, 활동보고서, 지출 증빙서류 등 시기별 서류 제출

3.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 간담회, 활동 공유회 모임원 전원 필참

4. 공익 활동(봉사활동 등) 1회기 이상 활동 필수 (사업계획서 내 작성 필요)

6. 지원 취소 사항

1. 자조모임 활동 제한 내용 발견 시		
	지원제한 내용	예시
1	영리사업 목적	- 지원금을 받아 활동 후 수익을 낸 경우 - 목공방에서 만든 도마를 판매
2	종교적 목적	- 특정 종교를 포교, 전도할 목적으로 활용 - 종교활동(성경 공부) 등
3	정치적 목적	- 특정 정당을 홍보, 지지하는 활동 - 특정 정치인을 홍보, 지지하는 활동 - 선거운동 등
4	타 기관의 동일/유사 사업 선정	- 공동체 지원사업,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
5	그 외 사회적관계망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	- 음주, 흡연 등과 관련된 활동 - 사행산업과 관련된 활동 (카지노, 경마, 복권, 체육진흥투표권, 소싸움) 등

2. 활동보고서 등 각종 관련 서류 제출 2회 이상 지연 시

3. 신청한 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

4. 타 센터에서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 중복 참여 시

5. 용산구가족센터/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상황 발생 시

6. 센터와 모임 간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

7. 기타 센터, 모임 간 지속 불가능한 상황(내부 갈등, 불화, 안전 위협 등) 이 발생 시

7. 그 외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* 지원 취소 및 중간 포기의 경우에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**

*** 최종결과보고서 : 마지막 회기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**

II 프로그램 절차 및 제출 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비고
<p>프로그램 신청 4/20(월) ~5/10(일) 자정</p>	<p>[단체 신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(1인가구 등본 확인 필수) 2.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 (모임원 전원 각각 작성하여 하나의 메일로 제출) - 신청서, 동의서 서명 필수 3. 활동계획서 - 모임장(담당자 소통, 보고서 관리), 총무(활동비 관리) 선정 필수 - 활동 중 1회 이상 공익 활동(봉사활동 등) 필수 4. 메일 제출로 최종 참여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링크 (https://tally.so/r/ZjaMBB) (모임원 전원 회원가입 필수) * 신청서 : 센터 메일 제출 (ysfamilyct@nate.com) * 메일명 : "1인가구 자조모임(단체)_대표자명" * 신청서 작성 내용을 통해 심사 진행
<p>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5/15(금)</p>	<p>[개인 신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(1인가구 등본 확인 필수) 2.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 - 신청서, 동의서 서명 필수 3. 메일 제출로 최종 참여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링크 (https://tally.so/r/ZjaMBB) * 신청서 : 센터 메일 제출 (ysfamilyct@nate.com) * 메일명 : "1인가구 자조모임(개인)_신청자명" * 신청서 작성 내용을 통해 심사 진행 * 선정 전 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미진행 또는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 드릴 예정 * 선정 시 문자 안내
<p>오리엔테이션 [개인 신청자] 5/21(목) 19:00~21:00 예정</p>	<p>오리엔테이션 당일 진행 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조모임 관련 안내 2. 참여자 서약서 작성 3. 활동계획서 작성 - 모임장(담당자 소통, 보고서 관리), 총무(활동비 관리) 선정 예정 - 사업계획서 작성 예정 - 활동 중 1회 이상 공익 활동(봉사활동 등) 필수 - 신청서, 동의서 서명 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* 전원 필수 참석 * 참여자 서약서, 활동계획서 현장 제출

<p>오리엔테이션 [단체 신청자] 5/28(목) 19:00~21:00 예정</p>	<p>오리엔테이션 당일 진행 내용 1. 자조모임 관련 안내 2. 참여자 서약서 작성 3. 활동계획서 수정</p>	<p>* 신청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* 모임원 전원 필수 참석</p>
<p>모임활동 (6월~11월) *총 6회기 활동</p>	<p>1. 활동보고서 (매월) 2. 예산집행 증빙자료 - 영수증 - 구입 물품 사진 - 활동 결과물 사진</p>	<p>* 활동보고서/예산집행증빙자료 - 매월 24일까지 메일or오픈채팅방으로 제출 * 메일 제목 : "1인가구 자조모임_[모임명] 0월 서류 제출" * 파일명 : "[모임명]0월_활동보고서" "[모임명]0월_증빙자료"</p>
	<p>1. 최종 결과보고서</p>	<p>* 11월 메일 제출 (일정 추후 공지) * 메일 제목 : "1인가구 자조모임_[모임명] 최종결과보고서" * 파일명 : "[모임명]최종결과보고서"</p>
<p>중간 간담회 8월 중</p>		<p>* 모임원 전원 필수 참석</p>
<p>활동 공유회 11월 중</p>	<p>1. 만족도 조사지 2. 사후 인터뷰지</p>	<p>* 모임원 전원 필수 참석 * 활동 내용 정리 파일 요청 예정</p>

III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예산 기준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액	비고
식비· 다과비	- 1인	13,000원	- 활동 사진, 활동보고서 ※ 예외: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재료비로 인정 가능 ※ 비대면 시 사용 불가
시외 교통비	- 운임비	실비	- 시외/고속버스, 철도, 항공 운임만 해당 ※ 시외/고속버스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출/도착하는 버스를 의미,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은 제외 - 현지 택시, 시내버스는 미포함 - 교통카드, 유류비 지급불가
숙박비	- 1인	20,000원	
재료비	- 재료비	실비	- 구입물품 사진
교육비	- 교육비	실비	-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며, 참여자 역할에 따라 필요시 지원
체험비	- 체험비	실비	
대여비	- 대여비	실비	- 대여물품 사진
대관비	- 대관비	실비	- 대관 장소 사진 - 이체 시: 사업자등록증, 계좌이체확인증 제출
도서구입비	- 도서구입비	실비	- 구입도서 사진 - 전체 사업비(활동비)의 10% 이내 ※ 예외: 독서모임 등 도서구입이 교육재료비 인정되는 경우
보험비	- 보험비	실비	- 여행 및 탐방 시 상해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- 보험증권사본, 계좌이체확인증 등
입장료	- 입장료	실비	- 입장권, 참석자명단

※ 기타사항

- 세금계산서,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 기본 증빙서류 제출은 각 항목별 공통 사항
- 명확한 산출 근거 및 용도와 목적 명시
- 부득이 상기 항목 이외 및 금액 초과한 사업비 사유 명기하고,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 조정
- 증빙자료는 사진(활동 내용, 구입물품 등)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금전등록기 영수증, 온라인 이체 확인증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이며, 영수증에는 거래내역(품목) 기재, 카드전표는 거래내역서 첨부
 - ▶ 단, 식비 및 다과비는 거래내역서를 참석자 명단으로 갈음 가능
- 사회적 관계망 모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

< 의무적 제한업종 > (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4. 지방보조사업비 사용제한 업종)

- 유흥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)
 - 일반유흥주점 : 룸싸롱, 단란주점, 가라오케, 가요주점, 요정, 비어홀, 바 등
 - 무도유흥주점 : 클럽, 극장식 주점, 나이트클럽, 스텐드바, 카바레 등

※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'기타주점'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(권고)
- 위생업종 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